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고용노동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중·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(이하 ‘무급가족종사자’라 함)이 산재보험 가입 가능토록 법 개정에 따라 무급가족종사자 산재보험 보험급여 청구 요건과 재요양시 휴업급여 지급기준을 정하는 등 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무급가족종사자의 보험급여 청구 조문정비(안 제75조)

산재보험 임의가입이 무급가족종사자가 중·소기업 사업주와 동일하게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나. 무급가족종사자의 재요양 등에 따른 휴업급여 등 지급기준 조문정비
(안 제76조)

무급가족종사자가 재요양 당시 중·소기업 사업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저보상기준으로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1. 3. 23. ~ 5. 2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5조 중 “사업주”를 “사업주 등”으로 하고, 같은조제1항 중 “제1항”을 “제3항”으로 하고, 같은조같은항 중 “사업주”를 “사업주 등 및 그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”으로 하며, 같은조같은항 중 “사업주”라”를 “사업주 등”이라”로 한다.

제75조제2항 중 “사업주”를 “사업주 등”으로 하고, 같은조같은항 중 “제3항”을 “제5항”으로 한다.

제75조제3항 중 “사업주”를 “사업주 등”으로 한다.

제76조 중 “사업주”를 “사업주 등”으로 하고, 같은항같은조 “사업주가”를 “사업주 등이”로 하며, 같은항같은조 중 “영 제1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”를 “법 제124조제3항”으로 하고, 같은항같은조 중 “사업주가”를 “사업주 등이”로 하며, 같은항같은조 중 “법 제56조 및 법 제69조를 적용할 때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는 경우로 보아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.”를 “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는 경우로 보아 휴업급여 지급 시에는 법 제56조제2항을 적용하고, 상병보상연금 지급 시에는 법 제69조제1항을 각각 적용한다.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1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75조(중·소기업 <u>사업주</u> 의 보험급여의 청구 등) ① 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로 보게 되는 중·소기업 <u>사업주</u> (이하 “중·소기업 <u>사업주</u> ”라 한다)의 보험급여의 신청·청구 및 결정·통지 등에 관하여는 영 제21조, 영 제37조, 영 제38조, 영 제44조, 영 제45조, 영 제48조부터 영 제69조까지, 영 제76조부터 영 제81조까지 및 영 제 83조, 이 규칙 제2조, 제5조,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3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	제75조(중·소기업 <u>사업주</u> 등의 보험급여의 청구 등) ① ----- 제3항 ----- ----- - <u>사업주</u> 및 그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(-- <u>사업주</u> 등“이라--)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② 중·소기업 <u>사업주</u> 의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법 제124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금액을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으로 한다.	② ----- <u>사업주</u> 등 ----- ----- ----- 제5항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③ 중·소기업 <u>사업주</u> 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및 충당에 관하여는 영 제84조 및 영 제85조를 준용한	③ ----- <u>사업주</u> 등 ----- ----- -----.

다. 제76조(중·소기업 <u>사업주</u>의 재요양에 따른 휴업급여 등의 지급 기준) 중·소기업 <u>사업주가</u> 재요양 당시 <u>영 제1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</u> 따른 중·소기업 <u>사업주가</u> 아닌 경우에는 <u>법 제56조 및 법 제69조를 적용할 때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는 경우로 보아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.</u>	제76조(중·소기업 <u>사업주</u> 등의 재요양에 따른 휴업급여 등의 지급 기준) ----- <u>사업주 등이</u>----- <u>법 제124조제3항</u> ----- ----- <u>사업주 등이</u> ----- -- <u>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는 경우로 보아 휴업급여 지급 시에는 법 제56조제2항을 적용하고, 상병보상연금 지급 시에는 법 제69조제1항을 각각 적용한다.</u>
---	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2 - 7705